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의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3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8.

발 의 자:유의동・김남국・김수흥

김원이 · 김회재 · 남인순

노웅래・박 정・서범수

송갑석·송옥주·안병길

오영환 · 강득구 · 유정주

윤재갑 • 윤재옥 • 이원욱

이형석 · 임종성 · 장철민

전혜숙 · 정진석 · 조수진

조승래 • 한정애 • 홍정민

황보승희 의원(2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파리협정의 시작을 앞두고 각 나라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

국내적으로 현행법 상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「기후위기대응 기본법」 마련을 통해, 체계적인 기후위기대응계획의 수립·시행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,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, 기후위기 영향평가와 적응대책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,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

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.

이에 「기후위기대응 기본법」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고,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(안 별표2 제71조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」 (의안번호 제673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1. 기후위기대응 기본법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